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3-374호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문화재청장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9588호, 2023.8.8. 공포, 2024.5.17.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 마련(안 제11조의2)
 - － 범죄경력조회요청서, 동의서, 회신서 등 서식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(무형문화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
- 전자우편: kalava@korea.kr
- 팩 스: 042-481-497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‘행정정보 - 법령정보/입법예고’ 란을 참조하시거나,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(전화 042-481-4968~49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